

학교장 추천 입학 전형 대상자 선정 규정

제1조 (목적) 대학의 학교장 추천 선발 전형 시행에 따라 적합한 대상자의 선정을 위한 선정 규정을 마련하여 추천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적격자가 선정될 수 있도록 한다.

제2조 (위원회 구성) 추천의 공정성, 신뢰성,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학교장 추천 입학 전형 대상자 선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칭한다.)를 설치하여 운영한다.

- ① 위원장은 교감으로 한다.
- ② 위원은 교무기획부장, 교육연구부장, 인성인권교육부장, 3학년부장, 3학년 학급담임교사로 한다.
- ③ 본 위원회는 업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3학년부장이 맡는다.
- ④ 본 위원회는 학교장 추천 입학 전형 대상자를 추천 절차와 기준에 따라 심의·선정한다.
- ⑤ 학교장 추천 입학 전형 대상자 선정 규정의 제·개정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자문을 거쳐 제·개정한다.

제3조 (추천 절차) ① 대상자는 학급담임교사가 추천한다.

- ② 학급담임교사는 추천 대상 학생에 관한 일체의 점수 산출 근거자료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한다.
- ③ 추천 대상 학생은 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 학교장의 승인을 얻어 최종 추천대상자로 결정한다.
- ④ 학교장은 필요시 최종 추천대상자를 결정하기 전에 추천 대상 학생을 면접할 수 있으며, 위원회에 재심을 요구할 수 있다.
- ⑤ 추천인원 제한이 없는 경우 및 해당 추천 대상 인원 이하일 경우는 학교장 추천 입학 전형 대상자 선정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학교장이 판단하여 추천할 수 있다.

제4조 (추천 기준) ① 학교장 추천 입학 전형 대상자 선정 기준은 각 대학에서 요구하는 선정 기준에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② 학교폭력 및 교권침해학생, 성범죄 관련 학생, 기타 중대한 비행으로 징계처분을 받은 학생은 협의를 통해 학교장 추천 전형대상자에서 배제할 수 있다.
- ③ 대학에서 요구하는 추천 기준이 특별한 기능이나 자질을 소유한 학생에 국한될 경우 해당 대학의 선정 기준에 의거 3학년부에서 추천 예비 순위를 작성하고, 학교장 추천 입학 전형 대상자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한다.
- ④ 지원자의 수가 추천 인원수를 초과할 경우, 1인 3회까지 기회를 부여할 수 있음(단, 희망자가 정원을 초과하지 않은 전형에는 제한횟수와 상관없이 추가로 지원 가능).
또한, 해당 대학교의 교과 성적 산출 방법에 따라 지원자 석차 연명부를 작성하고, 아래 출결 사항(미인정결석일수)을 고려한 감점표에 의하여 해당 학생은 감점한 후 성적순으로 선정한다.
※ 미인정결석의 경우, 다음과 같이 감점하여 성적에 반영한다.

미인정결석일수	3~4일	5~6일	7~8일	9~10일	11일이상
감점점수	대학별 만점 점수의 1%	대학별 만점 점수의 2%	대학별 만점 점수의 3%	대학별 만점 점수의 4%	대학별 만점 점수의 10%

- ⑤ 졸업생을 포함한 전형에 한해서는 재학생을 우선 추천하고, 재학생 중 추천 희망 인원이 없을 경우 졸업생을 추천할 수 있다. 이 때, 졸업생의 성적은 3학년 2학기까지의 종합성적

을 기준으로 한다.

- ⑥ 추천 대상 인원의 경합이 발생한 경우 다수 대학의 추천을 받은 학생을 추천을 적게 받은 지원자보다 후순위로 배정한다. 단, 지원자 간 추천 횟수가 같은 경우 해당 대학 전형 기준에 따른 교과 성적이 높은 학생을 우선 순위로 배정한다.
- ⑦ 해당 대학에서 수능 등급의 제한을 둘 경우(수능최저등급 적용), 당해 연도에 실시한 대외모의고사(교육과정평가원 주관 대수능모의평가와 교육청 주관 전국연합학력평가 등) 중 1회 이상 해당 대학교의 수능 최저학력기준을 통과한 희망자를 우선 추천할 수 있다.
- ⑧ 기회균형전형과 수시 6회의 제한을 받지 않는 대학의 전형은 별도로 추천한다.
- ⑨ 제4조에 의하여 선정되었으나 개인적 사정으로 추천 전형을 포기하는 경우에는 한 번의 학교장 추천전형 지원 자격을 상실한다.
- ⑩ 해당 대학이 요구하는 선정기준이 뚜렷하지 않을 때는 아래의 본교 선정 기준에 따라 추천한다.

1) 본교 선정 기준

가) 영역별 추천 성적 산출 비율

구분	교과영역(90%)	비교과 영역(10%)	계	비 고
	교과 성적	출결사항		
반영 점수	90점	10점	100점	영역별 추천 성적 산출은 전학년 실적을 대상으로 한다.

나) 교과 영역 성적 산출 방법

(1) 등급이 있는 모든 교과 점수: 학교생활기록부에 표기된 석차등급(1~9등급)에 의한 등급점수를 활용하며, 등급점수는 석차등급 1~9등급에 대해 9~1점을 부여한다.

석차등급	1	2	3	4	5	6	7	8	9
등급점수	9	8	7	6	5	4	3	2	1

(2) 등급 없이 성취도만 있는 모든 교과: 학교생활기록부에 표기된 성취도(A~C)에 대하여 상위 3개의 과목만 성적에 반영하며, 아래 표와 같이 등급을 부여하여 점수를 산출한다.

성취도	A	B	C
등급	1	3	5
등급점수	9	7	5

(3) 교과영역 점수 : 산출 공식은 다음과 같다.

$$\left\{ \frac{\text{등급점수가 부여된 교과 과목별 등급점수} \times \text{과목별 이수단위}}{\text{등급점수가 부여된 교과 과목의 이수단위의 총합}} \right\} \times 10$$

다) 출결사항 성적 산출 방법

(1) 전 학년 출결상황을 합산하여 미인정 결석 일수를 산출한다.

(2) 미인정 지각, 조퇴, 결과의 경우, 이를 합산하여 3회를 미인정결석 1일로 간주한다.

결석일수	0~2일	3~4일	5~6일	7~8일	9~10일	11일 이상	비고
환산점수	10	9	8	7	6	0	

제5조 (기타 사항) ① 규정에 제시되지 않은 사항은 ‘학교장 추천 입학 전형 대상자 선정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이 규정은 2023년 6월 12일부터 시행한다.